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44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김태규
김승수 · 김정재 · 김위상
임이자 · 박성훈 · 성일종
나경원 · 김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 등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또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해는 응급실 내 폭언·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응급실 정보 제공)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의 진료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
3.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31조의6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1조의6(응급실 정보 제공) ①</u> <u>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u> <u>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u> <u>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u> <u>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u> <u>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u> <u>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u> <u>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u> <u>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그</u> <u>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u> <u>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u> <u>다.</u> <u>1.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에 관</u> <u>한 정보</u> <u>2. 응급환자의 진료 진행상황에</u> <u>관한 정보</u> <u>3.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u> <u>치 실시에 관한 정보</u> <u>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u> <u>대상·범위·방법·절차 등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u><신설></u> 2. ~ 7. (생략) ②·③ (생략)	제62조(과태료) ①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제31조의6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u>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